「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경찰학 OX 문제 및 해설(6)

| 박용증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19 채용]

67.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19채용〉 ( )

[정답] X

[해설]

호프, 소주방, 카페(일반 카페가 아닌 주로 주류 판매)는 고용금지이다.

[19 경간]

68.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한다. ( )

[정답] X

[해설]

다방에서 영업장을 벗어나 차를 배달(티켓다방 배달) 하는 행위가 유해행위에 해당한다.

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신분비공개수사에 해당하지만,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은 신분위장수사에 해당한다. ( )

[정답] X

[해설]

신분위장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도 신분비공개수사에 포함된다(동법 시행령 제5조의3①)

70.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정답] ○

7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정답] X

[해설]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정답] X

[해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연장 규정은 없다.

73.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정답] X

[해설]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제25조의6①).

74. 사법경찰관리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

[정답] X

[해설]

48시간이다.

75.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정답] X

[해설]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범죄의 예방, 수사·소추, 손해배상청구소송, 징계절차,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예수손징】

7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정답] X

[해설]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 "스토킹행위" 유형
>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따지기도해(훼)】

1.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출장소장
2. 위해성경찰장비규정 :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 경무관~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장
3.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지역경찰관서 : 지구대장, 파출소장

7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로서, 사법경찰관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할 수 있다. ( )

[정답] X

[해설]

가정폭력처벌특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에서 긴급 응급조치의 내용으로 "격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100미터 이내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만 규정되어 있다.

7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 )

[정답] ○

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정답] X

[해설]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잠정조치를 반드시 청구할 필요는 없다.

80.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 )

[정답] X

[해설]

병과할 수 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시간 정리

200 시간 (~병과할 수 있다)	500 시간 (~병과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성폭력처벌법 【비타 500】

고시기획